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등에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 ~ 제5조)
- 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안 제6조)
 - 모니터링 및 기술상담, 인력양성 및 교육 등

라. 관련 기관 및 단체 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7조)

마.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부.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이하 “접근성”이라 한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4. 자원 조달
5. 그 밖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인력 양성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강원도, 타 시·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